

1. 자치단체 결산의 재평가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지방재정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결산과정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단식부기·현금주의회계방식에 의한 예산회계결산과 함께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방식에 의한 재무회계결산의 재정정보가 새롭게 추가될 뿐만 아니라 사업예산제도의 도입에 의해 기존의 품목별분류에 의한 예산회계 결산에도 많은 변화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에 운영되던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차이가 무엇이고, 이러한 차이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 것인가?, 그리고 사업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예산회계 결산에 야기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간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이러한 논란은 결산을 통한 재정정보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련인(정책결정자, 지방의회, 주민,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 등등)에게 유용한 재정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재정정보의 활용주체로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가 있는데 외부이용자로는 주민, 지방의회의원, 언론, 외부투자자, 시민단체 등이 대표적이며, 내부이용자로는 정책결정자와 공무원이 있다. 지방의원들은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재정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반해 주민들은 대부분 소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재정보고서를 접하게 된다. 따라서 주로 결산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에 대한 재정공시방법의 개선은 당연히 계속 추진되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세 등 주민이 부담하는 재원의 비중이 커져야 한다는 외부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주민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정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결산(closing)은 재정의 운영 실적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정리·기록한 것으로 회계연도 동안의 세입, 세출 등 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의 도입에 따라 결산의 의미가 소극적인 재정통제를 넘어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정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결산은 국가의 재정운영결과 및 재정상태, 재정운영성과를 결산 주체별로 일정한 형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한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결과를 보고하고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 시 재정운영에 환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된다. 따라서 예산회계에서는 결산을 당초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 결과를 확정하는 의미, 즉 예산집행의 법적책임을 해제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데 반해 재무회계에서는 지역주민, 지방의회, 중앙정부 등 정부이용자에게 재정운영결과를 보고한다는 재정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II.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쟁점

1. 지방자치단체 결산 현황

1) 지방자치단체 결산제도

지방재정법 결산 규정은 예산회계의 결산과 재무회계의 결산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

정하고 있다. 제51조에서는 예산회계의 결산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는데 세입은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을 세출은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불용액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에 재무회계의 결산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같이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을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결산서류, 시기, 결산검사 등에서 차이가 생기게 되며, 불가피하게 중복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결산총평의 경우에는 같은 재정집행을 표현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중앙정부와 같이 하나의 결산보고로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이경섭, 47).

2) 사업예산제도에서의 결산의 의미

지방재정법 제51조에서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예산제도의 도입에 의해 세입·세출 예산의 분류가 변화되었다.

사업예산제도는 성과지향의 예산체제로서 품목별예산제도의 목 중심에서 사업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에서 기존의 5장 16관에서 13분야 51부문으로 변경하고 예산품목은 38목 109세목에서 38편성목 129통계목으로 변환되었다. 제출서류는 세입세출예산서, 첨부서류, 참고사항으로 구분되나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를 통해 사업단위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결산은 사업예산체계에 의해 예산집행 실적을 사업중심의 결산서류로 작성되어 사업내역 및 예산액 및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표시함으로써 사업예산 및 결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업예산에서의 결산은 여전히 현금주의회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회계결산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니게 되나 재무회계결산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2. 중앙정부의 결산제도

국가회계의 기본이 되는 '국가회계법'이 2007년 제정되고 2008년에 개정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중앙정부회계에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하여 2009년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국가재정법은 2006년에 국회를 통과하여, 2006년 10월 4일 공포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국가재정법은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며 이 법률의 제정으로 과거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은 폐지되었는데 '예산회계법'이 예산과 회계를 중심으로 한 법률인데 반하여 국가재정법은 예산, 기금, 결산, 국가 채무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 과정에서 결산보고서 제출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었는데 국가재정법 제8조, 제56조부터 제61조, 제73에서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내용은 국가회계법에, 결산원칙, 보고서 제출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은 국가재정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회계에 관한 법체계를 완비하였다. 기금이 적용받는 결산절차도 정비하여(국가재정법 제73조)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부분은 국가회계법에 따라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기금도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되도록 회계기준을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통일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하여 결산하도록 하였다.

국가회계법 제14조 결산보고서의 구성에서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결산 개요,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성과보고서가 이에 해당된다. 동법 제15조는 결산보고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제14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 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작성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한편 제15조의2에서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계속비 결산명세서,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이월명세서,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성인지(성인지) 결산서, 예비금 사용명세서, 「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재원조성실적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③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통합재정수지표,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금사용명세서를, ④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비교

결국 예산결산과 재무회계의 결산간에는 회계처리의 범위, 인식기준, 결산서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들간의 차이가 왜 나며, 재정정보의 활용이란 측면에서 이들간에 어떠한 조정이 필요한가를 규정해야 한다.

〈표 1〉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비교

	예산회계결산	재무회계결산
인식기준	현금변동시점에 인식하는 현금주의	거래발생 시점에 인식하는 발생주의
회계범위	재무자원(수입, 지출)	경제적 자원(비용, 수익, 자산, 부채)
회계처리대상	세입·세출관련 예산거래	예산거래 및 비예산거래
결산서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출납폐쇄기한	설정 필요	불필요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차이는 〈표 1〉과 같은데 이는 기본적으로 단식부기·현금주의회계에 비해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가 가지고 있는 회계상의 특성에서 유래되는 부분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 차이가 나는 부분 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예산회계결산에서 산출되는 재정정보는 재무회계결산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비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¹⁾ 결산서류간에 연계성이 없어 신뢰성이 적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데 재무회계결산 정보는 재무제표간에 연계성이 있어 정보의 신뢰성과 의사결정에의 유용성이 높아지게 된다. 즉, 재정운영보고서의 재정운영결과는 순자산변동보고서의 재정운영결과와 일치하며, 재정상태보고서의 기말순자산과 순자산변동보고서의 기말순자산은 일치하며, 예산회계결산의 세입세출결산 결과와 발생주의 재무회계결산의 조항항목을 작성하기 위한 예산결산 결과 항목인 총잉여금은 일치한다.

현 지방재정법 결산규정이 재무회계결산에 의한 재무제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 제출 등을 별도로 규정하여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과의 조정이나 체계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산보고서, 결산시기, 결산검사 등에 있어 중복과 상호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결산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필수보충정보)는 ①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하는데, ② 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며 4항에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③ 제2항의 예산결산요약표 및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는 예산결산이 완료된 후에 첨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

4. 주요 쟁점

1) 사업예산제도 도입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치단체의 기능(분야, 부문) 아래 사업체계(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를 설정하고, 그 아래에 예산의 성질별 구분인 편성목을 표시하는 예산체계를 설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예산구조가 일관된 기준에 의해 분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분류방식의 체계화가 미흡하며 결산에서 산출되는 정보와 사업원가, 사업성과와의 관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사업의 체계적인 분류는 단시간내에 쉽사리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그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 1) 자산, 부채에 대한 정보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되어 재무제표에 통합관리되지 않으며, 유량(flow)의 결산정보만을 제공하여 저장(stock)의 결산정보를 생성하지 못하고, 현금자원의 변동을 기록하여 원가 및 비용정보가 산출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
- 2)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2006), 540쪽을 참조할 것.

새로운 재정개혁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기존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담당공무원의 관례답습적인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방안과 다양한 재정제도의 통합적 연계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부족하였다

현재 시행되는 재정제도는 다음과 같다.

① 중기재정계획제도(1988년 법제화), 재정투·융자심사제도(1994년 법제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심사대상의 제한성, 심사의 부실, 추후 심사에 대한 평가시스템 부재 등의 한계가 있다.

② 사업예산제도(2008년 시행): 사업중심의 예산체계를 구축, 예산집행결과를 성과평가와 연계시키는 예산기법으로 성과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분류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 과정을 소홀히 하여 사실상 자치단체의 실제 예산운용은 기존의 품목별예산제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③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2007년 시행)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등 재무제표가 산출되고 있으나 자치단체 전체의 거시적 정보만 산출되어 재무회계정보의 활용이 미흡함. 사업별 원가정보의 산출을 위한 준직제정과 미국과 같이 사업에 대한 순원가(net cost)보고서가 필요하다.

④ 성과평가(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법제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BSC 등 정교함 평가시스템이 도입되었으나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기여하기 보다는 연례적 행사로 생각되며, 목표와 성과지표의 개발이 미흡하여 실제 사업운영과 유리된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사업이 아닌 조직 전체의 목표와 성과를 제시하기 때문에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증진을 위한 구성원의 노력과 연계되지 않으며, 사업별예산제도와 복식부기회계과도 유리되어 있다.

재정개혁제도들이 단편적·비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지방재정운영이 사업보다는 조직단위를 중심으로 편성·집행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통합적 사업관리시스템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사업예산제도가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재무회계결산의 정보유용성 제고

재무회계결산에 의해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 순자산의 변동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그간 예산회계결산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부채의 포괄범위가 넓어진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무제표에서 산출되는 보고실체별 거시적 재정정보는 사업별 성과를 평가하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사업을 중심으로 한 관리회계적 관점에서 재정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은 도서관, 보건소 등 개별 사업단위의 재정상태와 순원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하며 아울러 행사, 축제, 청사운영경비 등 세분화된 회계과목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보고서(기능별)는 자치단체별로 수익과 비용, 운영차액을 보여주는데 그치고 있어 사업별분류로 세분화된 순원가(net cost)를 산출하여 사업별 비용과 수익, 이들간의 차이인 순원가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체계는 미국 연방정부, 주 및 지방정부, 영국의 순원가보고서,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운영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의해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가준칙으로 별도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2009년 6월 말 공포를 목표로 한 원가계산준칙(안)이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감사원, 각부처간에 의견조정 중에 있다.

원가계산준칙에서는 원가집계대상, 국가회계실체의 구분, 프로그램순원가와 재정운영순원가의 계산 등 발생주의회계에 기반한 비용을 원가로 집계하는 것으로 국가재정운영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내용이라 하겠다.

지방자치단체 순자산변동보고서는 2009년부터 2008년 결산에 대한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일반순자산을 별도로 보고함으로써 정보가치를 높이게 될 것이다.

자산, 부채에 관한 이전 예산회계결산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복식부기팀에서 자산실사를 하여 공시한 자산, 부채 등에 관한 재무회계결산자료(재정상태보고서, 부속명세서 등)의 가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07년 결산시 예산회계결산자료(공유재산보고서, 물품보고서, 채권결산서, 채무결산서)와 재무회계결산자료간의 자산, 부채에 대한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2009년에 발표되는 2008년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차이가 해소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복식부기팀의 자산 및 부채자료를 통합하고 집계하는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농업기술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 등 무형의 자산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복식부기회계 결산을 통해 이러한 자산이 정확히 기록되고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

III. 결산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결산제도의 개선은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으로 이원화되어있는 구조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문제와 재무회계결산의 유용성을 제고하는 두가지 측면에서 다

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7년부터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를 전면 도입하는 등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했으나 당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회계지식수준과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정보처리능력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반면에 2009년부터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를 시행한 중앙정부의 경우(재무제표의 국회 제출은 2년 유예) 보다 개선된 재정환경하에서 결산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관련조직의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복식부기관련조직의 개편

지방자치단체 결산회계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에 속해있는 복식부기회계와 결산관련업무를 회계결산과로 개편하여 결산회계업무의 전문성과 통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³⁾ 아울러 정부회계분야의 전문가 싱크탱크로 2003년에 발족된 후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의 제정 등 팔목할만한 활동을 하다가 새정부 들어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 폐지된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심의위원회는 2006년에 제정되어 2007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의 조문 개정과 새로이 제정되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원가준칙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중앙정부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회계결산심의관과 회계제도과, 결산과를 두고 있으며 국가회계법 제8조에 의거 국가회계제도와 그 운영, 국가회계의 처리 또는 결산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09년 4월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회계제도과는 국가회계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총괄, 국가회계 관련 법령·기준의 입안·해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결산과는 정부의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등 정부결산 총괄, 정부결산제도 관리·운영 및 연구·발전, 정부통합 예산결산, 재무결산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원가관리제도 운영, 정부결산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재정집행 실적의 관리, 결산 분석·평가 및 재정환류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다.⁴⁾

3) 국가회계법 제26조(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는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 지도 및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산보고서를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결산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고국에 국고과·국채과·국유재산과·출자관리과·회계제도과 및 결산과를 두고 있다.



자치단체의 경우 그간 별도의 정원으로 운용되던 복식부기팀이 폐지되어 복식부기 회계 관련업무는 단지 연말에 재무보고서만을 작성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산 회계결산 및 재무회계결산 조정, 자치단체의 자산, 부채를 총괄 집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복식부기팀을 유지하여 결산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관리, 사업별원가관리가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⁵⁾

2. 재무회계결산 체계의 개선

지방재정법의 결산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정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같이 재정운영보고서를 사업별 순원가가 산출되는 체계로 전환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① 적절히 분류된 사업별예산제도의 사업체계도를 사용하고, ② 원가계산준칙의 제정이 시급하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경우 결산보고서에 성과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성과평가를 사업예산, 사업별순원가, 사업별 성과체계로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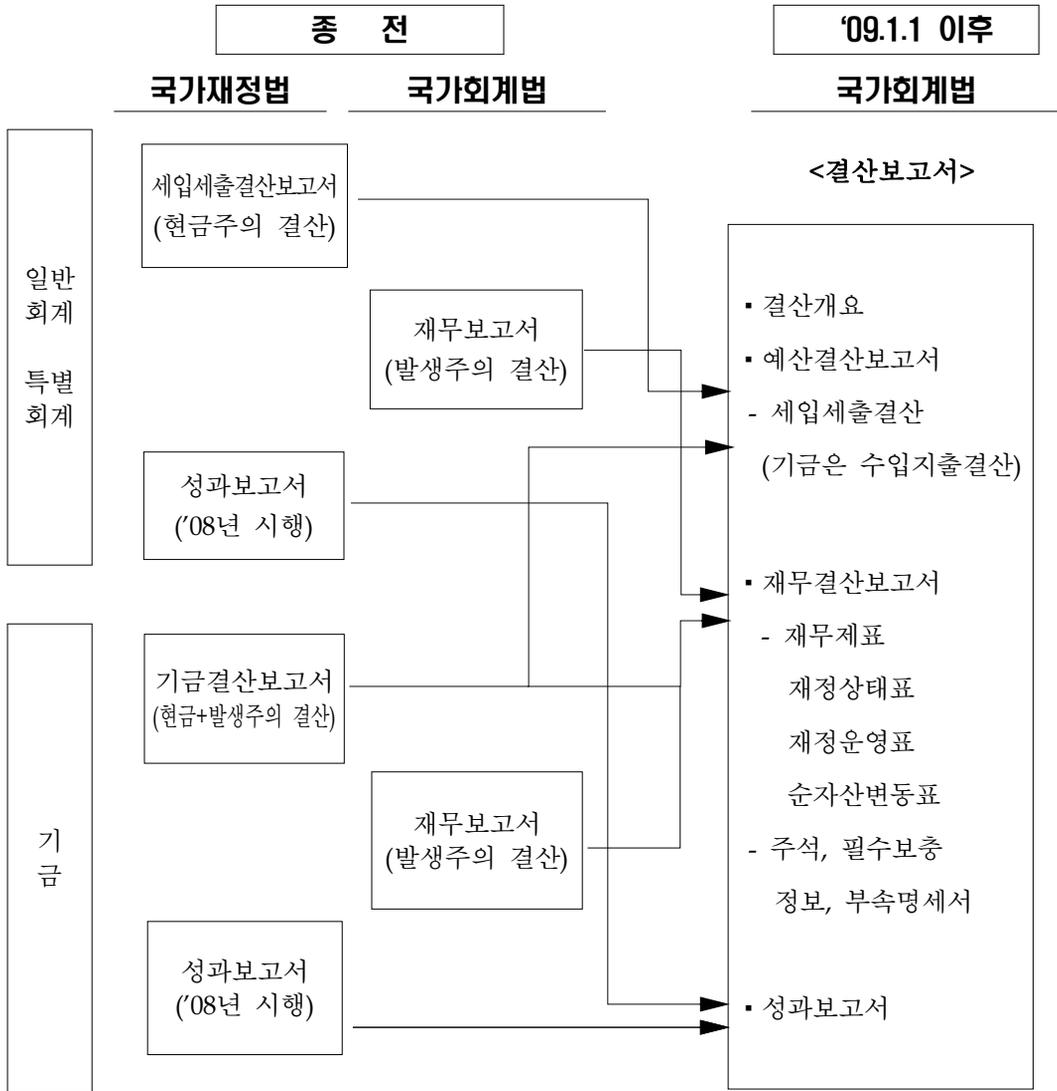
3. 재무회계결산으로의 일원화

단시간내에 사업예산의 분류방식에 복식부기·발생주의에 의한 재무회계결산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산회계결산서는 재무보고서의 한 부분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인데(강인재, 111) 과도기에는 중앙정부와 같은 결산체계를 참조하여 하나의 결산보고서에 결산총평,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보고서)를 통합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예산회계의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은 재무회계결산서로 통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⁶⁾ 아울러 예산회계 결산에 의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 제출과 재무회계결산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 제출을 통합하여 단일화하여야 할 것이다(이효·이삼주, 156).

아래 표는 2008년 말 개정된 국가회계법에 의해 2009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정부 결산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
- 5) 관리대장과 실사결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실물은 존재하나 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누락자산, 대장에 기록되어 있으나 실물이 없는 자산이 이에 해당한다.
6) 성과보고서를 결산보고서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을 것이다.

〈표 2〉 국가회계법 개정 전후의 결산보고서 비교



4. 예산회계정보시스템

현재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e-호조시스템과 복식부기, 자산관리, 사업예산과의 연계가 필요한데 사업예산구조에 의해 원가계산이 가능한 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은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시스템을 연계하고, 통합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료를 분류하는 체제를 말한다.

〈참고문헌〉

- 강인재(2003).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개혁: Statement No. 34의 시사점.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1권 제1호.
- 이경섭(2009). 2009년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 적용 발생주의 정부회계의 이해. 미발표자료.
- 이효·이삼주(2007). 사업별 예산과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제도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11(제406권).
- 한국행정연구원(2009). 고위정책결정자를 위한 정부회계.
- 행정자치부(2006).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 

